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등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구직자취업촉진법’)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등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9. 9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

-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등 처분 통지 공시송달
- 근 거: 구직자취업촉진법 제29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 (생년월일)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송달 불능 사유
			처분 사유	처분의 내용	
조O기 (82.01.09.)	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 (이하생략)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등 처분 알림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취업활동 계획 재진단 필수 대면상담을 위해 여러 차례 전화 연락 및 출석 통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상담일('25.4.22./4.24.)에 방문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여 구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	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② 종료일로부터 3년간('26.7.20.~ '29.7.19.)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

- 공고기간: 2026. 9. 9. ~ 2026. 9. 23.(15일간)
-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국민취업지원과 이강미(Tel. 051-860-2001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